



집단소송 1세대 김주영 변호사의 조언

“로또 사듯 집단소송 뛰어들면 위험”

“집단소송은 변호사에게 기회이자 유혹”  
“진실, 정직, 최선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집**단소송은 변호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이 뒤따르고, 위험한 측면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해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는 집단소송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증권이나 금융 관련 투자자 피해소송을 수십 건 수행하며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고급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수호천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원고소송 전문로펌의 효시**

총 470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LG그룹 구분무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0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은 실권주 공모 관련 집단소송 등이 한누리가 수행한 대표적인 집단소송으로, 한누리는 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 측을 대리해 원고소송을 담당하는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s Law Firm)의 효시쯤 되는 법률사무소다.

이른바 불특정다수가 관련된 불법행위, 집단적 분쟁이 빈발하면서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집단소송이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사건 수입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가세해 경쟁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열 양상도 없지 않은 게 현실. 최근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져 또 한번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 분야의 1세대 변호사 중 한 사람인 김주영 변호사를 만나 집단소송에 특화해 성공한 노하우와 집단소송 수행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과열 양상 없지 않아**

-집단소송이 변호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이 인기요인이라고 보나.

“먼저 집단소송이 사업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워낙 당사자가 많다 보니 개인별 배상액이 크지 않아도 상당한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는 매력 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선 일종의 틈새시장이고,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또 공익성도 있다. 불특정 다수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집단소송 사건이다. 집단소송 수행의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변호사들을 이 분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은 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에 터진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을 첫 집단소송으로 꼽는 사람도 있다.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유통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집단적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권

“ 배상액 크지 않아도 성공보수 상당 다수의 작은 권리 찾아주는 보람도 ”





리의식 제고, 집단적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집단소송이 앞으로 더 많이 제기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게 김주영 변호사의 전망.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위험,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만큼 변호사로서 리스크가 적지 않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유통 피해자들 권리의식 높아지고 인터넷 카페, SNS도 활성화 집단소송 더 늘고 발전할 것”

은 분야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집단소송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분야”라며 변호사들에게 거듭 주의를 환기했다.

-어떤 측면을 조심해야 하나.

“집단소송 대리하다가 변호사 그만두고 싶어 한 사람들 꽤 있다. 워낙 집단소송 수행에 따른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감옥까지 갔다 온 변호사도 있고, 집단소송 잘못했다가 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변호사도 여러 명 봤다.”

-재정적 어려움은 집단소송을 수행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다. 3심제의 속성상 1, 2심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집단소송이다. 보통의 소송도 그렇지만, 집단소송 수행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소송비용 많이 올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요즘에는 전문가를 감정에 활용해야 하고 패소시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많이 올라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정적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한마디로 배 띄워놓고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게 집단소송”이라며,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계속 노력을 저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용도 많이 들고, 따라서 집단소송을 맡은 원고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기간 동안 수입 없이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가 맡아 100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은 소 제기에서 확정까지 8년이 걸린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2000년 10월 소액주주 360여명을 대리해 대우전자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08년 9월 26일 서울고법에서 안진회계법인 등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우전자가 사실상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거액의 배상금을 낼 수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8년 걸린 대우전자 사건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특히 분식회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과실상계의 합리적인 사유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선례가 된 기념비적인 판결로,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누리 입장에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한누리가 맡아 진행한 피해자 360여명의 집단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누리가 2심부터 관여한, 먼저



“집단소송 하다가 감옥 간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변호사도 여럿”

제기된 선행소송이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007년 10월 25일 의뢰인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 선고를 들으러 법정에서 나갔던 김 변호사는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수 백 명의 방청객이 대법원 판결을 들으러 직접 출석했는데 더 이상 들이킬 수 없는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으므로 엄숙하고 처절한 분위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지요. 솔직한 희망은 2심에서 우리가 진 선행 사건은 파기환송이 되고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행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는 것이었는데 후행사건이 먼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일부 승소 판결이 파기되었다면 패소 판결이 맞다는 취지란 말인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선고법정을 나서는데 다른 법정에서 선행사건의 선고를 들었던 직원과 의뢰인이 선행사건도 ‘파기환송’이라며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선행사건은 원고 패소를 명한 것 자체가 뒤집혔고, 후속 사건에서는 과실상계비율이 지나치다, 원고들이 승소

김주영 변호사는 누구...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서울대 대학원 수료(공정거래법 및 법경제학)
-미 시카고대 로스쿨 졸업(LLM, 공정거래법, 풀브라이트 장학생)
-육군 법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 Williams Woolley 법률사무소 근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변 경제정의위원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전문위원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위원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 “ 배 띄워놓고 몇 년 기다리는 게 보통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계속 노저어야 소송 지연될수록 수입 없이 버텨내야 ”

를 더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었어요. 대법원 판결은 주문만 읽고 선고를 끝내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 두 건 모두 승소 확정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십 건의 집단소송을 수행했지만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라며, “집단소송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를 낙관하고 선불리 행동을 하는 것도 집단소송 변호사에겐 금물. 김 변호사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맡아 2심까지는 잘 되었으나 3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변호사가 낭패를 본 사례라며 소개했다.

“담당 변호사가 2심까지 이겼으니까 3심은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액수의 성공보수를 받을 테니까 빚 얻어서 집도

사 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집단소송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승소한 김 변호사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다. 2004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이 그랬다.

한누리에 따르면, 342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 소송은 1심에서 21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으나 그 후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건이다. 특히 원고들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을 해 일부 배상을 받기도 했

으나 그 후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어야 했다. 더 나아가 피고들 중 일부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여 원고들을 대리했던 한누리가 원고들 대신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준 뼈아픈 사건이다.

###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한 비운의 집단소송”이라며, “그러나 투자자소송이 반드시 승소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일반인의 기대와 법원의 판결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 재판과정에서의 설득은 상식적인 설득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것 등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런 집단소송을 수십 건 대리하면서 김 변호사가 집단소송 수행의 첫 번째 철칙으로 강조하는 것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그래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인 집단소송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도 방지할

# “ 선형사건은 원고 패소 자체가 뒤집혔고 후속사건은 더 이겼어야 한다는 취지 ”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끊임없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가야 소송도 잘 되고 상대방의 반격과 같은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유대가 취약해져 변호사가 당할 수 있고 변호사가 쓰러지면 소송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위



정보통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집단소송 변호사인 김주영 변호사는 많아 봐야 수십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집단소송 발전단계로 초기단계로 진단하고, “법리나 제도적 기반이 더 성숙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금도 민사 손배소가 제기되고 있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누리가 수행 중인, 일반 소비자를 대리한 LPG가격담합 관련 집단 손배소가 대표적인 경우다.

### LPG가격담합 손배소 수행

이 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는 “지난 대선후보 여야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범위 확대가 확실시된다”며,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

해서도 증권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보다도 피해자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 김주영 변호사의 집단소송 진단

## “지금은 집단소송 초기단계...여건 더 성숙돼야”

### 담합 등 집단소송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엄청날 것

김주영 변호사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소송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 전망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소나 가격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배소, 약화(藥禍)소송 등 제조물책임 소송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김 변호사가 많이 수행하는 증권 및 금융상품 투자자 피해소송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집단소송. 한누리가 관심을 갖고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자 소송도 분류한다면 투자자 집단소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최근 한누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 부

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펀드 투자자 17명. 투자금액은 63억원에 달한다.

### 펀드 투자 17명이 소 제기

이와 함께 지역주민 등 거주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환경소송의 일종인 항공기소음 피해소송과 석회석 산지 주민의 분진피해소송,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의 입주나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지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단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해요.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열광하죠. 그렇지만 ‘잘 안 되어 간다, 재판이 잘 못됐다’ 그러면 완전히 돌변해 변호사를 공격하는 게 집단이에요. 한 두 사람한테 욕먹는 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집단으로부터 당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의뢰인들이 변호사 상대 소송

인천에서 진행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재판에 지자 의뢰인들이 거꾸로 집단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양대금 지급을 미루며 분양계약 해제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도모했으나 소송에 지는 바람에 밀린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물게 된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화살을 돌린 것.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 등을 선불리 장담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의뢰인들과의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로 집단, 집단소송의 속성을 표현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영웅이 된

“ 2심까지 이기자 빛 얻어 집 사 봤으나 3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변호사 낭패 ”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이 집단의 의뢰인들보다도 변호사를 타겟으로 삼아 반격하기 때문이다.

### 피고 반격에 원고 변호사 구속

“집단소송의 특징은 의뢰인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변호사가 오히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의뢰인 개개인별 승소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자기 사건인 거예요. 변호사 스스로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호사만 공격하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타겟 삼아 공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집단소송의 피고가 됐던 회사가 원고 측 변호사의 비리를 캐 형사고소하는 바람에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집단소송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에게 1명이든 100명이든 의뢰인이 있으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뿔 때는, 변호사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변호사를 건드리기 어렵지만, 의뢰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군대는 저 뒤에 있는데 나

혼자 앞에서 칼싸움하게 되면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고 거듭 의뢰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하나 김 변호사가 주의를 당부하는 대목은 여러 사람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집단소송의 속성상 흔히 등장할 수 있는 카페지기, 피해자모임 대표 등 중간 모집책과의 관계.

김 변호사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 중에 사람을 모아왔으니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변호사다’ ‘반드시 이긴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부추기고 소송 결과에 대해 과장해 얘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뢰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간 브로커 조심해야

김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감안, 한누리에선 아무리 대표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고, 백명이 됐건 천명이 됐건 그 천명 한명 한명이 다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받아 제출한다고 소개했다. 사건 초기 수입을 받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연명으로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도장 받아서 위임장을 만드는 식으로 했다간 나중



“ 의뢰인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리지만 의뢰인과 단절되는 순간 변호사 위험 ”

에 ‘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 단계에서 의뢰인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임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확고한 입장이다.

### 현투사건 당사자 1500명 넘어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1500명이 넘었던 현투증권사건에서도 당사자별로 모두 개별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표가 선정이 되고, 대표랑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소송비용 등 돈 문제도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당사자 모임에서 5000만원을 걷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조합 운영비로 썼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비 한다고 해서 걷어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며 5000만원 전체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들의 내부문제에까지 변호사가 끌려들어 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무법인 한누리의 홈페이지에 보면, 한누리는 집단소송에 임하는 자세로 진실, 정직, 최선의 세 가지 모토를 제시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김주영 변호사는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며 차례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진실을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진실에 입각한 변론이 가장 힘이 있다는 게 한누리의 생각이다.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그걸 피고는 알려주지 않고, 원고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누리가 나서 진실을 찾아가는 식이다.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다. 한누리가 그동안 한, 두건을 제외하고 거의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진실을 탐구하는 변론전략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전술도 구석명(釋明)신청이라든지 문서목록제출 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전문가증인의 활용 등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중시한다.”

“두 번째는 정직인데, 누가 정직하지 않고 누구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말인가.

“수많은 당사자가 관련되는 원고소송, 집단소송에선 참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말이다. 집단소송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하면서 승소 전망이나 진행상황, 보수 조건 등과 관련된 사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뒷돈 주겠다며 합의 제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비유로 얘기하면, 한창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 측으로부터 원고 측을 대리하는 우리한테 70정도에 합의를 하자 그러면 변호사에게 별도로 10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의해 왔다. 우리가 청구한 것은 100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측은 20을 깎아 80에 합의하는 셈이 된다. 변호사로서도 밀질게 없는 장사였다. 배상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고 할 경우에 청구한 100을 모두 받으면 성공보수 10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70에 합의를 해주고 별도로 10을 받으면 성공보수로 17을 챙기게 되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결과였다. 상대방 측에서 슬쩍 얘기하던데, 물론 ‘절대로 안 된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집단소송에선 원고 측 변호사가 그만큼 사건에서 주도적이다 보니 이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누리는 이 사건에서 97%선에서 합의했다. 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합의안보다 17, 변호사 몫을 뺀 70을 기준으로

어떤 변호사가 30~40%만 보고 소송을 한다면 우리는 70~80%까지 팩트를 찾아서 임한다. 그것이 한누리의 모토다. 탐사보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탐사소송을 추구한다.

**탐사소송 추구**

사건을 맡아보면 피해자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파생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왜 손실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 왜 손실 났는지 피고는 안 알려주고 원고는 몰라...한누리가 진실 찾아야

”

**김주영 변호사와 한누리  
“승소가능성 70~80% 되어야 소송 시작”  
“집단소송 수행하며 나도 한누리도 성장”**

1997년 9월 김앤장에서 독립한 김주영 변호사는 처음부터 집단소송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반 민, 형사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며 사무실도 법원에서 가까운 서초동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하며 관심을 두었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하고 99년 6월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투자자 집단소송에 뛰어들었다.

**돈 보다 전문화 표방한 결과**

김 변호사는 “돈이 된다고보다는 김앤장 시절 익힌 전문화를 표방한 결과”라며, “금융, 증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알아야 하는 투자자 소송을 분야로 정한 게 집단소송을 시작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초동을 떠나 여의도로 옮긴 이유도 흥미 있는 대목. 그는 “서초동의 일반적인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의도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화를 하려면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초동에선 그게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그 후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처음부터 수 십 년간 투자자 피해소송의 한우물을 파야겠다는 해안이나 선견지명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 번 소송을 시작하면 몇 년씩 재판이 진행되어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1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그의 솔직한 설명이다.

“8년을 끈 대우전자 사건만 해도 금융감독당국과 법원까지 인정한 명백한 분식회계사건이고, 법에 손해배상산정방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격렬한 법률적 공방이 이어지며 최종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8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을 만큼 집단소송의 피해배상은 너무 길고 힘든 경우가 적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었던 경우 한두 번 아니야”**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도망가고 싶었던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니라고 회고하고, “몇 년씩 이어지는 집단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도 한누리도 성장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만 15년의 연륜이 쌓인 한누리는 변호사 7명에 회계사 1명, 스태프 9명 등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탄탄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막강한 맨파워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공정거래 집단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사건을 수행하겠다는 게 한누리의 앞으로 계획. 김주영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는 집단소송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며, “승소가능성이 70~80%는 되어야 소송을 시작한다”고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스텝 포함 17명 진용**

이러 요즈음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젊은 변호사들은 너무 선불리 소송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만해도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책임관계가 규명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해진 다음에 시작해야 변호사가 책임 있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당 9000원, 7000원 하는 식으로 착수금 인허경쟁이 벌어지는 등 과열 양상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 천, 수 만명의 당사자를 대리하려면 인력 총원 등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피고 회사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 “한방 터트리고 그만둬야지 하는 변호사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정말 위험”

하면 27을 더 내놓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 으로부터의 신뢰”라고 전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신뢰 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뢰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유혹이 많지만 그럴수록 정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 그는 “정직하지 않으면 금방 다 알게 된다”고 거듭 정직을 강 조했다.

## 미국선 소 제기전 합의 제의도

이와 관련, 집단소송이 발달한 미국에선 유명한 집단 소송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면 피고가 될 상대방 기업에서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제 의해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줄 수 있 고, 변호사는 힘 안 들이고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다. 김 주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아직 이런 제의를 받아 본 적 은 없다”고 선을 긋고, “대기업으로부터 고문을 맡아 달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더러 있으나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컨플릭트(conflict)를 감안해 사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누리의 모토 세 번째가 최선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 연 설명할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우선 한누리가 좀 끈질기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대개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들 고 지치고 또 사람들이 바뀌면서 호지부지 될 수 있는 게 집단소송이다. 이런 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 재정, 인적 안정성 뒷받침 돼야

그러나 각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정적인 안정성, 인 적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로스쿨생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 에서 한누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사건을 맡으면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는 그 런 자세로 집단소송에 임하고 있다.

또 하나 내가 승부근성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후배변호사들한테도 한 건을 깊이 있게 해 보라는 주문 을 자주 한다. 집단소송을 해 보면 상대방 대리인으로 일류 로펌, 전관 출신 등 쟁쟁한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 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라는 주문이 집단소송 변호사에겐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다.”

## 증권거래법 등 강의 단골

김주영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 근무를 마친 1992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1997년 9월 독립, 이 무렵부 터 집단소송에 특화해 한누리를 원고소 송 전문로펌으로 발전시켜 왔다. 독특한 분야를 개척, 전문화에 성공한 주인공으 로 유명하다. 사법연수원과 서울지방변

호사회 등에서 자주 강사로 나서는 그의 단골 강의 주제 도 ‘변호사사무실 운영 노하우’와 ‘증권거래법’. 증권 거래법 강의에선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상품 판매사나 자산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실을 본 투자자 피해소송 등에 대해 많이 강의한다.

그는 강의에서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다며 집단소 송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대박에 대한 환상, 로또 시는 식으로 집단소송에 뛰 어드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치 직장생활은 충 실하게 안 하면서 로또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변호사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한방 크게 터트리고 변호사 그만둬 야지 하는 그런 변호사도 여러 명 봤어요. 하지만 이런 자세는 변호사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고 정말 위험해요. 미국에도 집단소송 하다가 파산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 다고 들었어요. 특정 사건에 너무 몰입해 집착하다가 그 사건이 잘 안 되면 파멸하는 거예요. 또 사건유치를 위 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기업 들로부터 역공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로펌이 둘로 쪼개 진 경우도 있어요.”

## 집단소송 하다가 파산하기도

그는 “작은 사건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을 도우려다 보 니까 여러 사람을 돕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소송으로 발전해야 하 는데, 피해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돈이 되겠다 이런 식으 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또 하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집단소송을 추구하더라 도 보통의 일반사건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성공보수 등에 있어서 집단 소송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잘한 사건들이 양에 안 차 보 이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엔 이런 작은 사건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두 7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한누리는 이런 원 칙 아래 일반 민,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도 폭넓게 수행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건을 차별하지 않고, 의뢰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누리는 홈페이지에서 “진실



에 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존한 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고, 합당한 보수가 지불되는 한 어떠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 30~40건 수행

집단소송만 약 15년의 경력이 쌓인 김주영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집단소송은 줄잡아 30~40건. 대부분이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대주주 등의 불법행 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 피해소송으로, 독실한 크리스찬 인 그는 선의의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일종 의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지요. 사명을 쫓으면 돈도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가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집단소송을 수행하며 깨달 았다는 집단소송 수행의 또 다른 원칙이다. ■

김진원 기자